

제7절 각종 지위확인 청구취지 기재례

1. 교원의 지위

☐ 교장직확인등 청구

1.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. 11. 19.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2. 주위적으로, 원고가 피고경영의 ○○고등학교의 교장임을 확인한다.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.
3. 피고는 원고에게 2011. 12. 1.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매월 1,784,6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①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만료시 당연퇴직 여부

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,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한다.

② 위 ① 항의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 여부

사립학교법 제52조, 교육공무원법 제6조, 제7조,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,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,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.(대법원 1994.5.13. 선고 94다4288 판결)